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4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차규근 · 박은정 · 서왕진
김재원 · 황운하 · 이해민
신장식 · 백선희 · 정춘생
강경숙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임

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체포·구속·압수·수색·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제198조·제238조·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①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및 제6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검사에 의한 송달)

제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察廳”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제8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②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8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제1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제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97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97조의4를 삭제한다.

제198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을 “석방할 것을”로 한다.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檢事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로 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檢事の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200조의4의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고”를 “통지”로 한다.

제200조의5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를 “사건을 檢事에게 송치하지”로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으로, “釋放하여야”를 “피의자를 석방하여야”로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를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檢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한다.

제2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을 “관할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를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로, “檢

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를 “사법경찰관리에게”로 한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을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214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의 소속 검찰청”을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

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2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으로 한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을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檢事가”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사)

제2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를 삭제한다.

제24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1조(피의자신문)

제2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는”을 각각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의”를 “사법경찰관의”로,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를 “광역공소청장에게”로 한다.

제245조의4 중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所屬檢察廳”을 “소속공소청”으로,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제256조(타관송치)

제2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가”를 “사법경찰관은”으로,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를 “수사를 마쳐야 한다”로 한다.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를 “「공소청법」 제5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청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검찰청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12조의 제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을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각각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3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察廳”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를 “사법경찰관의”로, “檢事の 所屬 檢察廳에”를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에”로 한다.

제417조(동전)

제4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檢察廳檢事가”를 “공소청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檢察廳檢事가”를 “공소청검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檢察廳”을 “공소청”으로, “檢察廳檢事가”를 “공소청검사가”로 한다.

제460조(집행지휘)

제46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察廳書記官”을 “공소청서기관”으로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檢察廳書記官”을 “공소청서기관”으로 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제4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檢察廳檢事”를 “공소청검사”로 한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檢察廳檢事”를 각각 “공소청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검사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71조(동전)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u> ①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형사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p>
<p><u>第1條(管轄의 職權調査)</u> (생략)</p>	<p><u>제1조의2(管轄의 職權調査)</u> (현행 제1조와 같음)</p>
<p>제32조의2(代表辯護人) ① ~ ④ (생략)</p> <p>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u>檢事</u>가 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제32조의2(代表辯護人)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사법경찰관</u>----- ----- -----.</p>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p>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 ----- -----<u>공소청</u>-----</p>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補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③ (생략)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檢事は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② (생략)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

②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삭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4조(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

관할 수사기관의 장-----

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

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⑥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

<신 설>

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
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
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
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
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
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① 사법
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
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
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
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② (생략)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9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소청

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⑧ (생략)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⑦ -----지방공
소청장-----

⑧ (현행과 같음)

<삭제>

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

<삭 제>

다.

② ~ ③ (생략)

④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생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

⑤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

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
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⑤ (생략)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의자 심문) ① ~ ⑥ (생략)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
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
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
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
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⑧ ~ ⑩ (생략)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第203條(檢事の 拘束期間) 檢事が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 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
放하여야 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공소청-----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건을 검
사에게 송치하지-----
-----.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
치받은-----

-----피
의자를 석방하여야-----.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② -----
사법경찰관은-----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

1. ~ 2. (생략)

② 前項 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 (생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

1. ~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

-----.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第218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の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

-----.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사법경찰관-----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협의하여-----

-----.

②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수사관서-----
-----.

③ -----

-----사법경찰관은-----

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범죄의 搜查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

② 사법경찰관-----

--.

③-----

-----사법경찰관-----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는-----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

② -----

-----광역공소청-----

-----.

③ -----

-----광역공소청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

-----그 소재지

를 관할하는 사법경찰관이-----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

-----.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은-----

-----.

② -----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

-----사법경찰관이-----
-----.

③ -----

-----사법경찰관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법경찰관은-----

-----.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

1. ~ 4.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

-----.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

1. ~ 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

경찰관-----

-----.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사법경찰관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

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정 등) ① -----

-----사법
경찰관은-----
-----.

② 사법경찰관은-----

-----.

③ -----사법
경찰관의-----
-----광역공소청장에
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45조의4(준용규정) -----
-----사법경찰관-----
-----.

<삭 제>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략)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に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삭 제>

제256조(타관송치) -----
--소속공소청-----

-----공소청
검사-----.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수사
를-----
마쳐야 한다.

제260조(재정신청) ① -----

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

-----.

⑥ -----

지방공소청장-----

-----.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

-----.

④ 사법경찰관이-----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 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死刑의 執行에는 檢사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공소청검사-----

-----.

제460조(집행지휘) ① -----

--공소청검사가-----

-----.

② -----

-----공소청검사가-----

-----공소청
-----공소청검사
간-----.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
-----공소청
서기관-----

-----.

② (현행과 같음)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각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
-----공소청서기관-----

-----.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

-----공소청검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1조(동전) ① -----

-----공소청검사-----

-----공소청검사-----

-----.

1. ~ 7. (생략)

②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
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
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
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
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
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광역공소청검사장-----
--지방공소청장-----
-----.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
회) ① -----

-----지
방공소청-----
-----.

② -----

--공소청장-----
-----.

③ (현행과 같음)